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4월 1일

○ 회부일자 : 1993년 4월 1일

3. 개 정 이 유

교육연구원의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수행상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조사를 분장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 현재 서무과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연구원 설치목적에 맞도록 조사연구부·지도보급부·진로교육부·교육평가부 및 서무과 순으로 개정함. (안 제3조 제1항)

○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 서열에 따라 재 조정함. (안 제4조 - 제8조)

5. 검토 의견

충청북도 교육원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연구원 설치의 목적인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교육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 행정부서인 서무과 보다는 조사연구부를 선임부서로 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교육연구원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